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9-74
------------------	-------

제출년월일 : 2019. 05.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구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목적 및 설치, 존속기한 (안 제1조~제3조)
- 나.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안 제4조~제5조)
- 다.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안 제6조)
- 라.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안 제7조~제8조)
-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안 제9조~제12조)
- 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 (안 제13조~제14조)
- 라. 부칙 (제1조~제2조)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42조
-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4. 18. ~ 5. 8.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신설 사전심사 결과 : 원안동의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과 관련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행정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교환차액” 수입금만을 포함한다.

1.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2.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 행정재산의 매입·교환에 필요한 취득비
- 행정재산 중 토지, 건물 및 그 종물의 설치와 보존·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이 경우, 해당 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의 50% 이내로 한다)
-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①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② 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무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교육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공유재산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산관리팀장이 한다.

⑦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 또는 권고받은 성과분석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조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기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 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제17조(수당)

- 행정재산의 매입·교환에 필요한 취득비, 보존·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

○ 비용추계기간 : 2020.01.~2023.12.(48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합계
세출	기금 예치	40,679,550	173,550	243,550	275,550	41,372,200
	시설비및부대비 (취득비)	0	2,538,000	2,500,000	2,500,000	7,538,0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수당	2,450	2,450	2,450	2,450	9,800
□ 총 비용	40,682,000	2,714,000	2,746,000	2,778,000	48,920,000	

4. 재원조달 방안 : 제4조 기금의 조성에 따른 재원조달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0	2021	2022	2023	합계
세입	매각수입	40,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46,000,000
	대부료	640,000	670,000	700,000	730,000	2,740,000
	변상금	42,000	44,000	46,000	48,000	180,000
합계	40,682,000	2,714,000	2,746,000	2,778,000	48,920,000	

5. 덧붙이는 의견 : 구체적인 세입·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기획경제국 재무과 이은희 (☎3153-860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염리3구역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23억원 및 염리2구역 주민편의시설(도서관) 신축에 238백만원 사용(2021년)
- 행정재산 취득비 및 보존·유지관리 등에 사용